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35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인영・이학영・전용기

박상혁 • 이정문 • 김용만

이기헌 · 장철민 · 임광현

김동아 · 김성회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 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 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 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 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 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 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건비 단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계속중인 도급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⑦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	8
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
	<u>위</u>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